

2020년 인쇄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

소공인의 대응력을 높이고 기업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업제품개발을 활성화하고자 「2020년 인쇄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2020년 9월 1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0년 인쇄소공인 협업제품지원사업
- 사업주관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
-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2020년 11월(사업비 소진시까지)
- 지원대상 : 고양시 인쇄업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기업

고양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소공인 지원업종(업종코드 C18)

코드	중분류	코드	소분류	코드	세분류	코드	세세분류
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1	인쇄 및 인쇄관련산업	1811	인쇄업	18111	경 인쇄업
						18112	스크린 인쇄업
						18119	기타 인쇄업
				1812	인쇄관련 산업	18121	제판 및 조판업
						18122	제책업
						18129	기타 인쇄관련산업
		182	기록매체 복제업	1820	기록매체 복제업	18200	기록매체 복제업
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
 - 기업부담금 없음(단,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자부담)

2.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

- 협업제품 개발 : 인쇄소공인-고양시소공인 간 협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경우

□ 지원 내용 : 소공인 간 협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비용 지원

구분	지원내용	비고
시제품 개발	- 시제품 개발 비용	제작, 수행업체는 기업 특성에 맞게 선정 가능
디자인 개발	- 디자인 개선 또는 신규 개발 비용 (포장 패키지, CI/BI, 앱 등(단순 홈페이지 제외))	
홍보·마케팅	- 홍보·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	

□ 지원 대상

관내 협업	- 관내 소공인 기업 간 협업 (동종 협업<한 협업에 한 개사만 지원>, 이업종 협업)
광역 협업	- 고양시 관내 기업과 타 도시 소공인센터 기업간 협업 (※ 이 경우 고양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)

3.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

□ 지원절차



□ 지원제외

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, 무등록 사업자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2019년도 지원기업(연속 지원 불가)

□ 선정기준

○ 기업선정

○ 기업선정 : 신청업체 중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우선순위로 선정 후 개별통보

○ 우선선정 지원(가점 부여: 총 10점 이내 항목당 2점씩 가점부여)

- 코로나19 피해 기업 : 2점
- 신규 지원신청기업 : 2점
- 센터 공동발주 기업 : 2점
- 2019년 센터 교육수료기업(대표 및 근로자 인정) 또는 2019/2020년 컨설팅지원업체 : 2점
- 수출실적 증빙업체 : 2점
- 인증(KC인증, 원산지인증, 우수제품인증, 녹색인증, 특허출원 포함) : 2점
- 관내 공장등록업체 : 2점

※ 동점 시 ① 신규 신청기업, ② 센터 공동발주 기업, ③ 센터교육수료자 순으로 선정

○ 신청서류

- 협업 과제 신청서류

구분	신청서류	필수	해당시	비고
1	협업제품지원 신청서	1부	-	첨부 서식 [제1호], 협업기업 2개 이하 가능
2	사업자등록증 사본	각 1부	-	협업신청기업, 협업기업
3	소공인 확인서	1부	-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발급 (http://sminfo.mss.go.kr)
4	회사 소개자료	1부	-	첨부 서식 [제2호], 자체 회사소개서로 대체 가능
5	협업제품지원 추진계획서	1부	-	첨부 서식 [제3호]
6	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	각 1부	-	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이용 발급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7	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	1부	-	첨부 서식 [제4호]
8	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	1부	-	·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·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1인 기업)
9	가점사항 증빙서류	-	각 1부	·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· 센터 교육수료자 또는 컨설팅사업 수혜업체 · 수출실적 증빙업체/국내·외 인증(특허출원 포함) · 관내 공장등록업체
10	협업기업 사업자등록증	1부	-	
11	협업제품 견적서	1부	-	협업 내용, 금액 必
12	(필요시) 과제 변경승인 요청서		1부	첨부 서식 [제5호], 과제 변경시 제출 必

4. 기타 유의사항

□ 선정 취소

- 사전승인 없이 협약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(변경승인 요청서 제출 필수)
- 지정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

□ 완료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
 - (제출서류) 지원금지급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
 - (지출증빙)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으로 확인
- 센터는 소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- 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
5. 접수 및 문의

□ 접수기간 : 2020년 9월 14일 ~ 9월 25일

□ 신청방법 : E-Mail, FAX, 방문 및 현장접수

□ 신청서 교부

- (재)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gtp.or.kr) > [공지사항]에서 서식 다운로드
-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goyangprint.gtp.or.kr>), > [센터사업] > [협업제품지원]에서 서식 다운로드

□ 문의처

- 문 의 : (재)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
 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9, 남정시티프라자 7차 905호
- 연락처 : 전화) 031-913-9401 팩스) 031-913-9405 이메일) gyun16@gtp.or.kr

붙임 :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각 1부. 끝.